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사회복지 개입방안 연구

손병덕* (충신대 사회복지학 조교수) • 이재서(충신대 사회복지학 부교수)

논문초록

가정폭력은 지속적인 폭력의 한 형태로서 피해여성에게 영적·심리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인생전반에 걸쳐 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목격·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가정폭력 발생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빈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과 적절한 대응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1)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성경의 제시를 찾고, (2)진보된 외국의 가정폭력 사례들을 일반사회·교회기반 기반 프로그램으로 분류, 그 특성을 분석하며, (3)이러한 성경적 관점 탐색과 외국사례들의 장점들을 기초하여 교회역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1)개별차원에서: 사례관리를 통한 전문 교회 사회복지 실천, (2)교회적차원에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지속적 연구, 가정폭력발견과 상담을 위한 기독교전문가 훈련, 목회현장에 구체적 실천, 설교를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거론, 그리고 (3)사회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교회 사회복지 관련정보개발·유포·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교회개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가정폭력, 교회, 개입, 예방, 교회 사회복지

2007년 3월12일 접수; 2007년 4월12일 수정; 2007년 4월14일 게재확정

* 제1저자

- I. 가정폭력의 문제
- II. 가정폭력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III. 가정폭력 위기개입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분석
- IV. 우리나라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의 개입방법 제안

I. 가정폭력의 문제

가정폭력은 배우자, 가족 혹은 친족사이에 발생하고 위협, 폭력 혹은 (심리적, 육체적, 성적, 경제적, 감정적) 학대를 자주, 심각하게 지속하는 것을 의미 한다 (영국 내무부 범죄경감웹, 2006.12). 2003년 한국갤럽에 의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516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가족폭력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부싸움의 경험이 76.3%였고, 결혼 후 배우구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3: 1). 여성가족부가 2004년에 행한 조사는 응답자의 69.2%가 자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여성 응답자 중 51.9%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매 맞는 아내' 8쌍 중 1쌍... '매 맞는 남편' 27쌍 중 1쌍, 동아일보 2005.02.23). 아동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목격한 경험도 남성 53%, 여성이 6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동아일보 2005.02.23.). UNICEF 보고도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가장 가정 내 아동폭력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미국 33.9만-270만; 영국 96만; 일본 42-87만; 한국 120만, UNICEF, 2006), 반면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신고률은 11.8%에 불과해 이와 같은 초기대응 미흡은 더 심각한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손, 발, 칼, 둔기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신체전반에 걸쳐 자상, 외상, 골절, 치아·코뼈함몰, 뇌손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된다 (Acevedo, 2000). 그러나 신체적 내·외상에서 오는 고통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실제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더구나 가정폭력은 주로 배우자, 가족, 이성 친구에게서 일어나는 까닭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폭력행위를 당했다는 수치심은 사안을 알리는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경향(Schechter & Edleson, 1999)이 있다. 가정폭력의 문제가 공적 사회복지 실천대상으로 인지된 후, 공공사회복지 대응기관이 설립·가동 되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고, 아동에 대한 폭력은 부모의 교육적 차원 양해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가정폭력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가정폭력은 피해에 대한 증거확보와 보전 그리고 즉각적 대응이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피해자의 수치심, 두려움, 인내로 인해 그런 과정은 지연되고 신체적 상처와 고통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인지·행동적 손상

Golding(1999)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희생이 된 여성은 폭력당시 신체적 학대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와 피해여성의 절반정도가 장기적 우울을 동반하며, 그 중 약 20%가 자살에 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의 경우는 그 부정적 효과가 더 심각하여 아동의 정서, 행동, 그리고 인지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학업성적의 저하, 과도한 근심, 불안, 위축 등을 경험하게 하며 성(性) 편향적 행동이 과도하게 발달하고 궁극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Hester et al, 2000). 부

모 간 폭력을 목격해 온 아동들은 단기적으로 정서·행동장애를 동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생활 부적응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Maker et al, 1998). 또한, 어린시절 성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외상후증후군과 스트레스 장애, 식욕부진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50-60%의 피해아동들이 성년이 되어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기도 한다(Jacobson & Richardson, 1987).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가정폭력과 관련된 피해여성들과 아동들의 장기적 심리·행동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보다 가정폭력의 장·단기적 실증 연구를 위한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교회와 가정폭력

주지할 만한 사실은 이와 같이 심각한 신체적·심리적·정서적·인지적 피해를 동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으로부터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가정폭력 관련 보고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으나, 미국의 경우 신앙여성 3명 중 1명이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받는 상태에 있거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Branson & Silva, 2005).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Brinkerhoff et al, 1992)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폭력이 자주 발견되며,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일 수록 학대남편에 대한 용서와 인내의 미덕이 강조되어 습관적 가정폭력이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도 나타난다(Nason-Clark, 1996).

우리나라는 점점 증가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 5월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2)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 가정폭력 실태조사,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보호시설의 종류 세분화(장기, 단기, 외국인, 장애인)가 시행시키고자 하는 법리적 성과(올해 여성관련 법·제도 어떻게 변하나, 강원일보 2007.01.04)는 있었으나 그

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개정의 검증작업이 수반되지 않아 그 실효성의 정도는 여전히 의문에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중요 기독교 총회들이 가정폭력의 심각한 피해를 인지, 총회차원에서 성직자의 책임과 대처방안들을 명시하고, 각종 보호·예방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Network of Presbyterians, 2006; The Archbishop's Council, 2006; Branson & Silva, 2005)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는 형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사회 뿐 아니라 교회 내 가정폭력의 대처필요를 요청하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외국의 위기개입 프로그램 사례들을 분석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한국교회사회복지의 개입가능성을 탐색, '교회의 개입방안'을 제안하려고 목적인다. 실천 가능한 교회의 개입방안에 대한 모색은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 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가정폭력문제 개입과 보호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II. 가정폭력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신앙인들마저 그 가해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가정폭력은 피해대상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나누는 것으로 결과(막10:6)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알려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이 결혼의 가치와 목적을 훼손하고 가정의 심각한 파괴로 매듭지어질 수 있는 까닭에 가정폭력의 원 목적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정으로서의 가족과 부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의 삶 VS. 가정폭력

인간은 진선미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와 위엄을 발현하여 가정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는 '창조언약'의 당사자였다(창1:28, Kostenberger et al, 2004). 하나님과의 창조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유지·발전시킬 가정을 이를 유일한 배우자(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하셨으며, 신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당사자로 세우셨다(창2:24). 따라서 한 가족의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주체로서 진선미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세계(가정, 교회, 지역사회, 국가)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유지·발전시킬 거룩한 책임에 자신을 투여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하나님 형상의 진선미를 추구하도록 방향 지워져야 하는 가정의 원 목적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향 해야 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에게 육적, 정서적, 심리적, 인지적, 영적 본질을 고통스럽게 하고 왜곡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고전6:19-20)이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거듭났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는 행위와도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잠재력(롬12:1)이 충분한 피해자의 그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막는 행위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본질이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함을 공생애 사역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치셨고(막10:45),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요13:1), 종국에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그 사랑의 크기와 실천적 방법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 없고 점 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처럼 남편은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보존할 사명을 완수하려는 열정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해야 하며(엡5:25),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엡5:29, Kostenberger et al, 2004; Anderson, 2003). 이와 같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폭력과 학대의 모습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칼빈은 결혼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기구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앞에 맺어진 언약을 평생토록 지속해야 한다” 고 하였다(Jensen, 2006:2, 재인용). 칼빈의 전통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였고 예수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셨으며,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거룩하게 된 기구이기 때문에, 육체적·영적 결혼결합 안으로 들어온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로하며, 정직과 근면으로 상호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허락된 인생의 날들 동안 지속할 것” (Jensen, 2006:2, 재인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경험될 수 있는 위로와 평화로부터 소외시키고, 피해 그리스도인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심각하게 제한시킨다. 나아가 그리스도인 피해자가 자신이 체험한 기쁨과 능력을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단절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런 정황들은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 교회 내외의 가정폭력 문제와 교회의 역할

교회는 교회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목양하는 책임(Bolt, 1983: 5, 재인용)을 가진다. 목양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 체험한 지상유일의 신적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관하여 증거 할 사명을 지닌다(Bolt, 1983.: 11).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한 역할 이해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잘 나타난다.

우리 자신의 빈궁한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그 복들의 무한함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곧 첫 사람의 반역이 우리에게 드리워 놓은 그 처참한 황폐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위로 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하여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을 거기서 찾으려 하며,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비참의 세계가 존재하며, 또한 신적인 의복이 벗겨진 이후로 우리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상태로 인하여 온갖 수치스러운 것들이 때를 지어 드러나므로, 사람은 각기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고 찢림을 받아 결국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그리고 타락과 부패에 대해 느끼게 되고, 이로써 참된 지혜의 빛과 건전한 덕, 모든 선의 풍성함,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칼빈, 기독교강요 상 제1장:41-42)...

경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일들을 행해야 한다.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관심을 갖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선의와 친절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삼도록 하자.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따라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청지기의 임무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열심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열심과 합칠 수 있게 되며,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열심을 이웃의 유익에 대한 열심에 굴복시키게 될 것이다 (칼빈, 기독교강요. 중 제7

장: 210)...

자신의 현존재와 완전히 차별되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Tait, 1985: 43-44)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능력을 현재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증거하고 위로하는 역할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다.

가정폭력은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특성을 가지며, 자신이 가진 힘의 우위를 최대한 이용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자신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게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발생(Dan Jones & Associates, 2006: 3-4)한다. 가정폭력의 현장에서 가해자는 폭력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더욱 파괴시키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고통을 준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구조의 외침을 호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교회는 외면할 수 없고(출3:7-8), 교회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정폭력의 잔인함,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심각한 소외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실제적 문제의 해소와 예방적 노력을 기울이는 구체적이고 전문적 역할이 요구된다.

III. 가정폭력 위기개입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분석

가정폭력을 개입하기위한 프로그램들은 여러 나라에서 국가적으로¹⁾, 지역

1) “예를 들어, 영국정부는 2003년에 국무성 주도로 ‘Safety and Justice: the Government’ s Proposals on Domestic Violence ‘를 발간하면서 가정폭력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정의

적으로2)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회기

(justice), 지원(support) ‘을 기본적 실천체계로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다(표 1 참조). 가정폭력예방과 보호, 피해자지지를 위한 일반적 실천방식은 성인과 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보전달, 관계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②위기그룹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접촉이 요이한 지지집단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③일반적 가정폭력의 상황 속에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숙소 제공 상담, 위기상담, 지역가정폭력 서비스 연계를 목적하고, ④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호지원, 대체숙소제공, 복합적인 공권력개입, 사법적 개입으로 단계적 위기개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LGConnect, 2006:17-49).”

2) “영국의 경우 지역단위로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 문제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다.”

- THE POLICE: 위기상황에서 전화 할 경우 여성경찰관의 주도하에 교통, 의료, 안전한 장소 주선
- WOMAN'S AID NATIONAL DOMESTIC VIOLENCE HELPLINE: 0808-2000-247 가정폭력관련 실제적·법적상담 www.womansaid.org.uk
- REFUGE 24 HOUR NATIONAL CRISIS LINE: 0808-2000-247 가정폭력관련 정보, 지지자원 및 실제적 도움 실행 24시간 상담
- DOMESTIC ABUSE RESETTLEMENT OFFICER: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거주장소 제공
- MEN'S ADVICE LINE AND ENQUIRIES: 0845-064-6800 남성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상담
- VICTIM SUPPORT: 0845-30-30-900 범죄적 목적의 가정폭력 대상자들의 문제상담과 경찰협조여부를 판단, 연결
- SHELTERLINE: 0808-800-4444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서비스
- THE SAMARITANS: 0345-90-90-90 24 시간 가정폭력 위기상담
- NATIONAL CHILD PROTECTION HELPLINE (NSPCC): 0800-800-5000 TEXTPHONE 0800-056-0566 아동관련 가정폭력 위기상담 및 정보제공
- CARELINE: 01624-817636 TSLcareline@onetel.co.uk 가족관계문제, 아동학대, 강간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정신적 위로제공
- RELATE: 01772-717597 비위기 상황의 가족관계 상담
- HEALTH SERVICES: 가정폭력으로 인한 의료적 문제 상담 및 해결
- LEGAL ADVICE: 1996년 가족법(the Family Law Act 1996)을 기초,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를 포함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상담 및 경제적 지원 상담
- CITIZENS ADVICE BUREAU: 지자체 주민 서비스국이 해당지역의 가정폭력 관련 정부지원체계 정보제공(☎South Shropshire Voluntary Action, 2007:15; ; LGConnect, 2006:62-68)

반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하여, 비교적 이 문제를 일찍 다루기 시작한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특별히 일반사회 프로그램과 교회기반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대상, 서비스기간, 개입방법, 치료평가도구 등의 프로그램 특징들을 분석(표1 참조)하였다.

부부행동치료(BCT:Behavioral Couples Therapy): 부부행동치료기법은 가정폭력이 알콜 중독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탐닉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가해자의 알콜 중독치료, 가족 내 알콜 영향 요소 제거 및 가족 간 상호작용방식 개선에 기본적 초점을 맞춘다 (Fals-Stewart, O'Farrel, & Birchler, 2003). BCT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을 알콜 중독과 알콜 탐닉으로 인한 자기행동제어능력 감소, 제어되지 않는 언어폭력과 공격적 행동, 그리고 그런 상황아래에서 가족의 부적응과 대응능력 상실 혹은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부정적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파괴적 결과로 이해한다. 따라서 알콜 중독 치료를 우선하고 가족 내 현존 혹은 잠재적 알콜 중독자 치료를 병행하며, 가족 간 부적절한 언어·신체적 상호작용의 개선이 중요한 목표요소들이 된다(Fals-Stewart et al. 2003).

BCT는 알콜 중독자의 배우자를 알콜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제적 노력자로 이해한다. 따라서 치료를 위한 12주에 걸친 부부의 치료동의약정기간 동안 부부는 알콜을 멀리하여야 하고, 알콜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알콜 중독 배우자의 알콜 사용여부를 매일 확인하도록 요청받는다(O'Farrell, 1999). 매주 1회 정도 병원을 방문, 소변검사를 통해 실제 알콜 사용여부를 중복확인하면서, 격주로 부부와 가족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양식을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치료자로부터 제공받는다(O'Farrell, 1999). 이때 부부와 자녀들에게 대화방법의 개선이 주로 교육되며, 자녀들의 심리·행동치료도 진행되고, 나아가 가족 내 스트레스 제공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Pediatric Symptoms

Checklist(PSC), Marital relationship(FAM)등의 표준척도를 사용, 목표했던 문제들이 개선되었을 때 치료는 종료되며 치료종료 후 2년 동안 3~4개월에 한번씩 치료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인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외상중심인지행동치료(TF-CBT: 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는 성적·신체적 학대, 가족·친척·이웃으로부터 폭력, 부모상실, 혹은 재난과 같은 인생의 매우 심각한 경험한 아동, 청소년, 여성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인지·행동적 문제를 치료자와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삶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방법이다(Kubany et al, 2004; The Center for Traumatic Str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partment of Psychiatry, Allegheny General Hospital). TF-CBT는 외상으로 인해 손상 받은 인지·행동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들이 기본적 치료목표가 된다. 즉 외상 후 스트레스가 외적문제행동의 형태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착안, 피해자 자신의 자기 존중감, 타인에 대한 불신, 심리적 불안 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며 결과적으로 인지적 문제로 인한 자해행위나 항정신성의약품의 탐탁과 같은 행동문제의 병행해결을 동시적 과제로 인식한다.

12~16주 진행되는 치료과정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지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여성들은 자신의 인지행동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폭력의 실체를 직접 표현하고, 자신에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지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치료자와 찾아나가게 된다. 이때 치료과정은 치료자와 피해자의 상호신뢰를 구축해 가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축된 감정과 손상 받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해소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치료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Depression(BDI), Self esteem(RSES), 그리고 Guilt(TGI, STGS)등의 표준척도를 사용 손상된 인지·행동적 문제의 해소정도를 측정하여 치료를 종료한다.

TF-CBT는 기본적으로 폭력피해자의 인지행동치료에 초점이 있으나, 가해 부모 혹은 가해 배우자의 동의한다면 치료에 동참하도록 하여 가해자들의 폭력적 행동 개선을 목적하는 특별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조력자들(The Advocates)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상담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팸플렛과 책자를 제작, 공공장소에 배포하고 다양한 가정폭력 강좌를 열어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폭력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을 목적하는 서비스이다(Idaho State Police, 2003). The Advocate 프로그램을 1997년-2001년 사이 실행한 결과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받는 피해자들이 2배 증가하였고, 일반인들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3배 이상의 인지도 향상을 가져왔고, 또한 법조인들에 대한 교육의 결과 가정폭력사범의 형 확정비율이 50% 향상되고 피해자들 100%가 치료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배려되는 결과를 나타냈다(Idaho State Police, 2003: 4-13).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피해자를 위한 법과대학생 조력자들(Law School Clinic Advocates for the IPV victims)은 가정폭력의 많은 수가 데이트 도중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데이트 상대자의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법률적 자문을 해 주는 법률임상상담소이다(Bell & Goodman, 2001). 법과대학생 가정폭력 법률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폭력발생 건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일반 가정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들은 (정서·심리개선 그리고 지지집단 형성 등) 프로그램의 목표가 분명하고, 프로그램의 지속기간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사후 개입평가도구의 존재가 뚜렷하여 문제의 발견과 개입방법의 선택, 그리고 사후평가에 따른 개입방법의 개선과 개발의 측면에서 교회기반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과 대비될 수 있었다(Tutty et al, 1996; Bell & Goodman, 2001; Kubany et al, 2004 ; Limandri & May, 2004).

외국의 교회기반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교회의 목회 영역 안에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성경적 응답을 기본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반적 연구 성과들과 가정폭력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ranson & Silva, 2007; Seeley & Plunkett, 2002, 표1 참고). 주로 교회 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기관에 비하여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집단 형성과 적극적 정보제공이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 설교시간에 가정폭력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식(Real & Ford, 1996)은 예방적,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기반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입의 결과에 대한 평가적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적인 교회개입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개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평가도구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후평가도구는 프로그램의 개입 대상의 개입 후 문제해결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보들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일반에 사회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이런 평가도구를 찾고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가정폭력의 문제들에 대하여도 교육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찾기도 어렵다는 사실도 아쉬운 대목이었다. 잠재적 전도의 대상이며, 가정폭력의 문제를 안고 있거나 혹은 가정폭력의 위기에 있는 지역사회 일원들을 향하여 성경이 적극적으로 문제시 하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교회가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적 역할을 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사회에 비하여 적절한 개입역할 노력이 부족한 것은 재고해야할 부분일 것이다.

〈표1〉 외국의 일반, 교회기반 가정폭력 위기개입 프로그램 사례

분류	대상	기간	개입방법	치료평가도구	저자
행동 치료 개입	알콜중독 가해자와 피해여성	*12주	부부행동치료(BCT:Behavioral Couples Therapy)	Pediatric Symptoms Checklist (PSC) Marital relationship (FAM)	Fals-Stewart, O'Farrel, & Birchler, 2003
심리적 개입	피해여성	*초기집단 : 2~3주 *개입: 9~12주 동안 매주 90분	학대여성개별인지의상치료(Individual cognitive trauma therapy for battered women): 이상 확신 개조와 부정적 자기인식 감소	Depression(BDI) Self esteem(RSES) Guilt(TGI, STGS)	Kubany et al, 2004 (미국)
지지 집단 형성	피해여성	*12주	조력자들(The Advocates): 피해자 상담 및 가정폭력 관련 책자 제작배포, 법률담당자들 가정폭력 관련교육	Physical abuse(CTS-2) Psychological abuse(PMWPA) Depression(CE SD)	Idaho State Police, 2003 (미국) Bell & Goodman, 2001 (미국)
		*2~6주 참석 매주 90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피해자를 위한 법과대학생 조력자들(Law School Clinic Advocates for the IPV victims)법과대학생으로 구성된 개별 협력 meeting 주선, 개별만남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 주로 법적조언, 안전계획, 정서지지 등의 도움에 초점		
심리적 개입 (교회)	피해자 평신도	*지속적 & 예비 중	복회상담, 부부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 정보, 안전계획, 공공도움 요청방법, 성정적 부부관계 기술 등 정보제공 예배 중 설교: 가정폭력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과 적용 전달		Beal, S. & Ford, J. (1996). (영국)
복합 교회)	피해여성 복회자 평신도	*Works-hop	지지집단 형성 평신도 상담		Branson, B. & Silva, A. http://www.focusministries1.org (미국)
복합 (교회)	교역자 평신도	*Works-hop	상담방법가이드, 지지집단형성		Seeley J. & Plunkett, C. (2002), (호주)

IV. 우리나라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의 개입방법 제안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쉽게 감춰어지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며 생애전반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면서 교회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함을 밝혔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가정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 안 가정폭력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 해소·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가정폭력의 성경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을 포함하는 한국교회의 실제적 역할은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소 혹은 해결하는데 매우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된 일반사회와 교회기반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가족구성원들, 그리고 지역사회(교회와 이웃)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의 일부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목회 상담적 역할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교회의 영적, 정서적, 심리, 인지적, 행동적, 심리·사회적 행동 모두를 목표과제로 선정하고 이와 같은 다중적인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소·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교회사회복지적 개입방안(그림1 참조)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개별 차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가해자, 가족을 위한 개별 교회 사회복지 실천방안

외국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교회기반 개입 프로그램은 '개입대상이 피해자에게 국한됨', '개입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심리·행동 측정도구의 사용이 부재', '경제적·법률적 고려들, 피해자·가해자·자녀 관계개선방법',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기술 교육 부족', '교회프로그램 참여 후 영적변화 측정도구의 사용부재' 등 발견되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개입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상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개별문제를 중심한 일반적 사회복지 실천방법인 사례관리 방법을 차용, 다음과 같은 교회기반 개입과정이 제안(그림1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개입시작: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 혹은 교회 내 구성원들에 의해 교회 기반 가정폭력 개입 서비스에 소개될 때 개입이 시작된다. 이때 교회 프로그램 실천 전문가는 피해자의 신원이 교회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며, 피해 당사자의 동의 범위 내에서 정보가 제공되도록 비밀유지의 원칙이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정: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신앙적 특성이 파악된다. 이때 교회개입의 특성상 영적, 신앙적 수준이 고려되어 교회의 영적개입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정도가 표준화된 임상척도를 사용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가족 내 외 교회, 이웃, 지역사회에서 가용 가능한 지지자원의 범위도 충분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해자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의 개입수준을 결정하고, 자녀들의 임상심리·행동적 특성들도 표준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③ 교회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개발: 사정에 기초하여 피해자, 가해자, 자녀들의 영적,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해소수준을 목표로 한 서비스 실행계획을 개발한다. 피해자의 욕구수준을 반영하되, 교회개입수준을 위하여 신앙적 특성과 영적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동의 하에 실천계획을 세운다. 가족 내, 친척, 교회, 이웃, 지역사회에서 가용가능한 지지·협력 자원들이 피해자·가해자·자녀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 혹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에 넣는다. 가정폭력의 사법적 특성상 공공기관인 교회, 병원, 전문심리 및 정서 치료, 법률자문 등 전문가 집단 개입수준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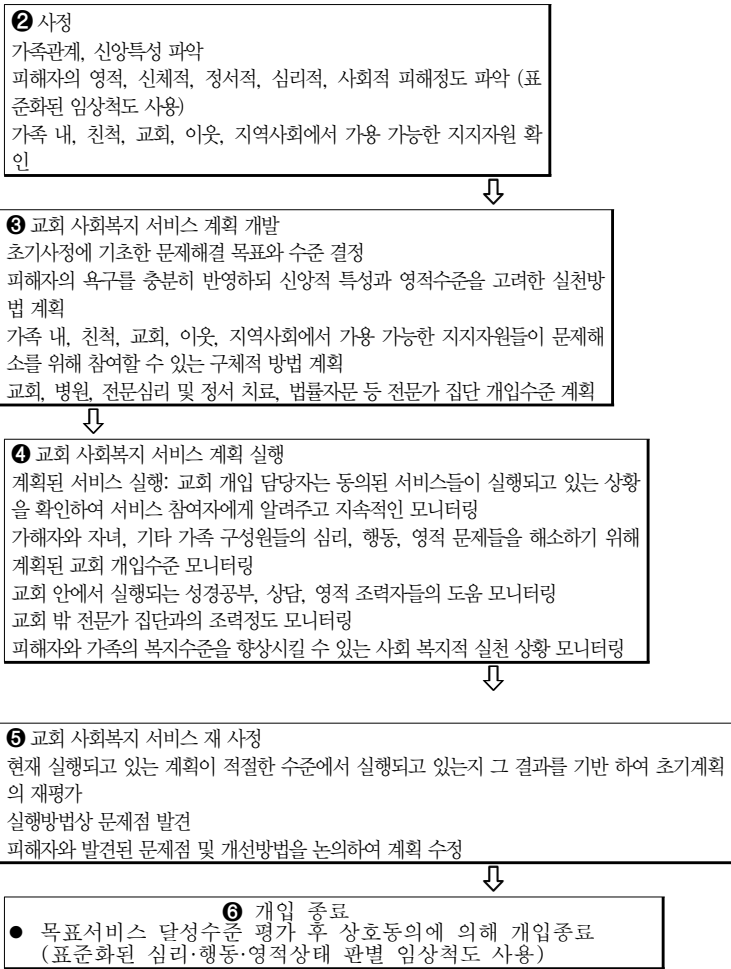
④ 교회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실행: 계획된 개입방법들이 실현되도록 교회 개입 담당자는 동의된 서비스들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여 서비스 참여자에게 알려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모니터링의 내용에는 '가해자와 자녀, 기타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 행동, 영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교회 개입수준'; '교회 안에서 실행되는 성경공부, 상담, 영적 조력자들의 도움'; '교회 밖 전문가 집단과의 조력정도'; '피해자와 가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실천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⑤ 교회 사회복지 서비스 재사정: 서비스의 실행도중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계획이 적절한 수준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기반 하여 초기계획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실행방법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때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방법을 피해자와 논의하여 개입 계획을 수정하여 새로이 수정된 계획을 개발, 계획실천에 포함할 수 있다.

⑥ 개입 종료: 피해자와 애초 계획한 목표서비스 달성수준이 다양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도달되었는지 표준화된 심리·행동·영적상태 판별 임상척도와 객관적 판단자료들을 사용하여 평가 후 피해자와 상호동의에 의해 교회 사회복지 개입은 종료된다.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 자녀들을 위한 신앙적 발달과 사회 복지적 수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가능한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

① 개입시작
가정폭력 사례의 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 위탁





[그림1]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 사회복지 개별차원 개입 흐름도

(NASW Standards for Social Work Case Management, 2007: 교회사회 복지실천 적용 안)

2. 교회적 차원: 가정폭력 예방·발견·개입을 위한 교회적 사회복지 실천방안

① 가정폭력문제에 관한 성경적 관점연구: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직접 연구조사를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미국과 캐나다의 자료는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그 발생빈도가 높다(Branson & Silva, 2005; Nason-Clark, 1996; Brinkerhoff et al, 1992)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순종과 인내에 대한 신앙적 강조가 가정폭력을 묵인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가정폭력을 전혀 정당화 하여 말하지 않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적 상황조장을 성경을 근거로 정당화 하지 않도록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위의 외국사례 프로그램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영적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 실직, 피신처, 가정폭력 가족 내 이동 양육,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지지집단의 부재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위로와 실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 정보와 대처방안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된 위로와 상처의 치유 그리고 의존적인 피해자를 강화하는(Geller, 1992) 등 교회의 도움에 대한 성경적 기초가 연구되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대처방안과 가족유지 방법들을 마련할 때도 교회가 동의하고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성경적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② 가정폭력 전담 기독교 사회복지사 혹은 기독교 상담가 훈련:

Gordon(1998)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현재상황에 대한 적극적 정보와 위로, 그리고 지지집단 발견을 상담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을 때 가장 도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교회가 가정폭력문제들 안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

단된다. 이와 비슷하게 2002년 호주 구세군교회에서 발간된 연구자료(Seeley & Plunkett, 2002: 4-5)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경험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교회 내 가정폭력의 문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유도하며, 가해자의 행동개선방법을 찾아내며,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지지집단의 형성'이었음이 나타난다. 호주구세군교회가 발견한 문제들은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 사실, 한국교회 상황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효과적 대응보다 기피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담인력의 양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된다. 교구 담당 교역자와 심방전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적 가정폭력 전문가 훈련이 시도되어 교회내의 가정폭력을 발견하고, 안전한 출구를 찾아내며, 가해자의 회심을 유도하며, 피해자 지지집단을 만드는 구체적 방법들을 교회특성을 살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③ 가정폭력 예방치료를 위한 목회실천계획 수립과 실행:

현재 많은 교회들이 결혼예비학교 등 결혼과 데이트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예: 사랑의 교회 www.sarang.org; 두란노교회 www.tbc.or.kr; 남서울은혜교회 <http://nsgrace.org> 등)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결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서·심리·신체폭력의 가능성과 대처방법과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도록 돕는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정을 비밀을 유지하며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문제를 목회적 측면에서 해소·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 목회실천계획 안에 같이 다루는 것도 교회 안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예배 중 가정폭력 교육 강화:

신앙인들에게 설교만큼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없다. 적절한 시기에 예배전체의 맥락에 부합하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다루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인 위로자로서의 교회역할, 가해자들의 성경적 책임을 강조한다면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안전한 장소로 긴급한 도피를 결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된다.

주일학교 교육에서 교회 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가능하다. 외국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교육자료(STOP: Schools Take on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London Brough of Islington, 1995)를 교회교육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차원: 지역사회 가정폭력 예방·발견·개입 교회 사회 복지 실천방안

외국의 많은 교회들은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명시하여 신앙인들의 시민적 자리매김의 모습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Network of Presbyterians, 2006; The Archbishop's Council, 2006; Branson & Silva, 2005). 한국교회들도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들을 정리한 소식지를 나누고, 단일교회가 가정폭력관련 훈련을 기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교회들과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내, 지역사회 안 가정폭력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연

대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자연스럽게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에서 논의된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 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면 위기대처 방법 및 영적 심리적 지지방안들을 찾는데 매우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교회 개입프로그램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기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개입방법에 따른 사후 평가 프로그램의 부재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개입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평가도구의 개발은 대상자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선방법과 효과적 개발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영적, 심리적, 정서적 진전정도를 측정하거나, 실제 가정생활의 제반 개선 목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측정하는 것은 목회 적 측면에서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별 교회 사회복지 실천, 성경적 관점연구, 기독교 사회복지사 혹은 기독교 상담가 훈련, 가정폭력 노출가정을 돌보기 위한 목회실천계획 수립과 실행, 가정폭력의 문제와 심각성을 알리는 말씀전달, 교회 사회복지 관련 정보 개발·유포·지역사회와 연대 등 가정폭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 해소하기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가정폭력의 안전지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견지하고 지역사회의 관련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실천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노력도 이행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후속방안을 개발하는데 유효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점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의 유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일보 (2007.01.04), “올해 여성관련 법·제도 어떻게 변하나” .
- 동아일보 (2005.02.23), “배 맞는 아내 8쌍 중 1쌍… 배 맞는 남편 27쌍 중 1쌍” .
- 여성가족부 (2005),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2002~2004년 운영실적” , 서울:여성가족부.
- 영국 내무부, 범죄경감웹 (2006.12), <http://www.crimereduction.gov.uk/dv/dv01.htm>.
- 칼빈 (2004), 『기독교강요(上)』,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3), PR-20030304 “부부싸움, 그 실체는 무엇인가?” , 서울:한국갤럽조사연구소.
- Acevedo, M. J. (2000), *Battered Immigrant Mexican Women's Perspectives Regarding Abuse and Help-Seeking*,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8, 243-257.
- Anderson, R.D. (2003), *Covenant VS The New Testament*, *Spindle Works*, 6, 1-10.
- Bell, M.E. & Gooddman, L.A. (2001), *Supporting battered women involved with the court system - An evaluation of a law school based advocacy intervention*, *Violence Against Women*, 7, 1377-1404.
- Bolt, J. (1983), *Church and World: A Trinitarian Perspective*, *Calvin Theological Journal*, 18, 5-31.
- Branson, B. & Silva, P. (2005), *Domestic Violence among Believers: Confronting the Destructive Secret*, *Christian Counseling Today*, 13(3), 24-27.
- Brinkerhoff, M.B., Grandin, E. & Lupri, E. (1992), *Religious involvement and spousal violence: The Canadian cas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1, 15-31.
- Dan Jones & Associates. (2006), *Domestic Violence: Incidence and Prevalence Study*. Salt Lake: UT.
- Dulles, A.C. (2005), *The Covenant With Israel*, *First Things November*, 16-21.
- Fals-Stewart, W., Golden, J. & Schumacher, J. (2003),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day-to-day examination*, *Addictive Behaviors* 28(9), 1555-1574.

- Geller, J.A. (1992), *Breaking Destructive Patterns*, The Free Press.
- Golding, J.M. (1999),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a Risk Factor for Mental Disord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2), 99-132.
- Gordon, J.S. (1998), *Helping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Garland Publishing Inc.
- Gray-Reneberg, J., Beal, S. & Ford, M.J. (1996), *Domestic violence: a focus guide for clergy and religious leaders for Lincoln and Lancaster County*, Lincoln-Lancaster County Health Department, Health Promotion and Outreach Division.
- Hester, M., Pearson, C. & Harwin, N. (2000), *Making an Impact: Children and Domestic Violence- A Reader*, Jessica Kingsley.
- Idaho State Police. (2003), *The Advocates: A Domestic Violence Victim Services Project*, Meridian, Idaho: Planning, Grants and Research Bureau Statistical Analysis Center.
- Jacobson, A. & Richardson, B. (1987), *Assault Experiences of 100 Psychiatric Inpatients-Evidence of the Need for Routine Inqui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908-813.
- Jensen, D. (2006), *What Do Presbyterians Say About Marriage?*, *Covenant Network of Presbyterians*.
<http://www.covenantnetwork.org/FAQ-pdfs/jensen.pdf>
- Kostenberger, A. J., Jones, D. W. & Akin, D. L. (2004), *God, Marriage, and Family: Rebuilding the Biblical Foundation*, Good News & Cross Way.
- Kubany, E. S., Hill, E. E. & Owens, J. A. (2003), *Cognitive trauma therapy for battered women with PTSD: Preliminary finding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 81-91.
- LGConnect. (2006), *Vision for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ffected by domestic violence: guidance to local commissioners of children's services*, LGConnect(Local Government Association). www.adss.org.uk
- London Brough of Islington. (1995), *STOP: Schools Take On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London Brough of Islington, Women's Equality Unit.
- Maker, A., Kimmelmeier, M. & Peterson, C. (1998), *Longterm psychological consequences in women of witnessing parental physical conflict and*

- experiencing abuse in child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574-589.
- May, B.A. & Limandri, B.J. (2004), *Instrument development of the self-efficacy scale for abused wom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7, 208-214.
- Nason-Clark, N. (1996), *Relig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Exploring the rhetoric and the response of Evangelical Churches in Canada, Social Compass*, 46(4), 515-536.
- NASW Standards for Social Work Case Management. (2007), http://www.socialworkers.org/practice/standards/sw_case_mgmt.asp
- O'Farrell, T. J. (1999), *Behavioral Couples Therapy for Alcoholism and Drug Abuse, Psychiatric Times April 16(4)*.
<http://www.psychosocial.com/addiction/bct.html>
- Riddington, J. (1989), *Beating the 'Odds': violence and women with disabilities, Disabled Women's Network*.
- Schechter, S. & Edleson, J. L. (1999), *Effectiv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Cases: Guidelines for Policy and Practice*, NCJFCJ, Reno, Nevada.
- Seeley, J. & Plunkett, C. (2002), *Women and Domestic Violence: Standards for Counselling Practice, The Salvation Army Crisis Service*.
- South Shropshire Voluntary Action, (2007), www.ssva.org.uk
- Tait, I.M. (1984), *Calvin's ministry of encouragement, Covenant Seminary Review*, 43-99.
- The Archbishop's Council, (2006), *Responding to domestic abuse: Guidelines for those with pastoral responsibilities, Church House Publishing*.
- The Center for Traumatic Str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partment of Psychiatry. Pittsburgh, PA: Allegheny General Hospital.
<http://modelprograms.samhsa.gov/pdfs/model/TFCBT.pdf>
- Domestic Violence: A National Report(2005), www.crimereduction.gov.uk
- UNICEF. (2006), *Behind Closed Doors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UNICEF.

ABSTRACTS

Chongshi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ork

Byoung duk Sohn(Chongshin University)

Jae seo Lee(Chongshin University)

Domestic violence is common in countries, and causes lasting spiritual·psychological·emotional·physical damages to the victim's health. Although Korea is the worst country among OECD countries in terms of domestic violence, the prevalence is getting higher than ever every year. But Korean churches have tolerated or ignored domestic violence, although church is not a safety-zone for domestic viole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in addressing domestic violence, pastoral efforts may have an important role both i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irst, in the individual level, case management should be conducted to tackle and solve domestic violence. Second, in the church level, it may be important to continue on-going research on the biblical perspectives of domestic violence, Christian training for finding and counseling of domestic violence within church, ministerial focus on domestic violence issues, and awareness raising publically via preaching and church social work information development Last, in the local community level, dissemin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community networking may be contributed to promote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Key words: Domestic Violence, Church, Intervention,
Prevention, Christian Social Work**